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(안)

의안 번호	27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3. 4. 14.

제안자 : 운영위원회 위원장

□ 제안경위

- 제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(93. 4. 12) 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

□ 제안이유

- 의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어 자치입법 및 의안심의 등 의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문을 받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의회에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위촉 (임기 1년)
- 도의회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, 위원회 자문, 기타 법령해석 등의 자문을 받도록 함.
- 월정수당(월 100천원 이내)과 의회 출석수당(예산의 범위내)을 지급

□ 예산상황

- 월정수당(년) : 2,400천원 (100천원 × 12월 × 2인)
- 의회출석수당 : 2,000천원 (50천원 × 20일 × 2인)

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의회 의장은 도의회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자문사항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1. 도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각종 의안심의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촉기간)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 때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사건실적부 비치) 도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당)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월 100,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.

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때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 별 지 >

사 건 실 적 부

구 분	사건명	의 려 년월일	의 려내용	회 신 년월일	회 신 내 용	비 고
종 류						
소 송 사 건 위 원 회 자 문 법 령 해 석 기 타						